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140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의 일부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변론 종결2023. 3. 28.

판결 선고2023. 4. 25.

주 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42,1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4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0.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은 24,342,884원

및 그 중 2,451,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6.부터 2021. 2. 14.까지 연 6%, 3,465,614원에 대하여는 2021. 1. 29.부터 2021. 2. 27.까지 연 6%, 5,479,518원에 대하여는 2021. 2. 24.부터 2021. 3. 25.까지 연 6%, 6,090,290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2021. 5. 7.까지 연 6%, 6,856,462원에 대하여는 2021. 4. 16.부터 2021. 5. 15.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피보험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20. 8. 13. 및 같은 달 27.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상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1보험	2020. 8. 13.	F	G	5,000,000	2020. 7. 15. ~ 2021. 7. 14.
제2보험	2020. 8. 13.	H	I	5,000,000	2020. 7. 15. ~ 2021. 7. 14.
제3보험	2020. 8. 13.	J	K	8,000,000	2020. 7. 15. ~ 2021. 7. 14.
제4보험	2020. 8. 13.	L	M	5,000,000	2020. 7. 15. ~ 2021. 7. 14.
제5보험	2020. 8. 27.	N	O	5,000,000	2020. 8. 27. ~ 2021. 8. 26.
제6보험	2020. 8. 13.	P	Q	7,000,000	2020. 7. 15. ~ 2021. 7. 14.

나. 원고는 위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2021. 1. 15. 주식회사 G에게 2020. 12. 28.자 청구에 따른 2,451,000원, 2021. 1. 28. I에게 2020. 12. 31.자 청구에 따른 3,465,614원, 2021. 2. 23.

K에게 2021. 1. 29.자 청구에 따른 5,479,518원, 2021. 4. 7. 주식회사 M에게 2021. 3. 12.자 청구에 따른 5,000,000원, 2021. 4. 7. O 주식회사에게 2021. 3. 22.자 청구에 따른 1,090,290원, 2021. 4. 15. Q 주식회사에게 2021. 3. 24.자 청구에 따른 6,856,46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20. 12. 2. 조카인 피고에게 남양주시 R 아파트 S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2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T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주식회사 U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및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2021. 2. 4. 내지 2021. 2.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21. 4. 16. E,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3020,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B가 2021. 6. 23. 파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302)를 받았고,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C가 이 사건 종전 소송 중 피고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그 후 2022. 1. 19. B에 대한 파산이 폐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다시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1. 18. 'E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2,884원 및 그 중 2,451,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6.부터 2021. 2. 14.까지 연 6%, 3,465,614원에 대하여는 2021. 1. 29.부터 2021. 2. 27.까지 연 6%, 5,479,518원에 대하여는 2021. 2. 24.부터 2021. 3. 25.까지 연 6%, 6,090,290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2021. 5. 7.까지 연 6%, 6,856,462원에 대하여는 2021. 4. 16.부터 2021. 5. 15.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21. 6. 24.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20. 12. 2.) 직후 내지 그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B는 2021. 6.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B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 내지 4개월 이후 원고가 위 각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U,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는데, 당시 위 아파트에 경료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25,164,186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664,186원 +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500,000원 +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원}이었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B는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는, B가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B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30,042,151원¹⁾으로 산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을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16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125,164,1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34,835,814원(= 160,000,000원 - 125,164,186원)이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0,042,1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²⁾

그 가액배상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42,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김상현

별지

$30\text{일}/365 \times 6\%) + (5,479,518\text{원} \times 30\text{일}/365 \times 6\%) + (6,090,290\text{원} \times 30\text{일}/365 \times 6\%) +$
 $(6,856,462\text{원} \times 30\text{일}/365 \times 6\%) + (2,451,000\text{원} \times 130\text{일}/365 \times 9\%) + (3,465,614\text{원} \times$
 $117\text{일}/365 \times 9\%)$
 $+ (5,479,518\text{원} \times 91\text{일}/365 \times 9\%) + (6,090,290\text{원} \times 48\text{일}/365 \times 9\%) + (6,856,462\text{원} \times$
 $40\text{일}/365 \times 9\%) + (24,342,884\text{원} \times 642\text{일}/365 \times 12\%)$ (원 미만 버림)

2) 갑 제10호증 기재 시가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이와 다르지 않다.